

중국	2015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
----	--------------------

(2015년 1월/중국 상하이 지사)

구분	핵심 내용
검역	☐ 질검총국 [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] 실시 요구

항목	주요 내용
	☐ 주요 내용 (2015년 제 3호) - [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] (질검총국 제 152호, 이하 ‘관리방법’이라 함) -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했음. ‘관리방법’ 실시 협조하기 위하여 질검총국 ‘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관리방법’ 관련요구 실시에 대한 공고(질검총국 2013년 53호) 발표했음. 상술 총국령 및 공고 실시 상황에 의거, 감독 관리를 결합하여 리스크 평가 하에 현재 [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감독관리 방법] 실시요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했음 1. 입국 검역검사수속 처리해야 하는 수입 유제품 종류는 기 발표한 생유(生乳), 생유제품, 파스퇴르멸균유 외에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추가했음. 2015년 2월 1일부터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수입할 때 [검역허가증] 제출해야 함 2. 질검총국이 수입 유제품 검사 및 리스크 모니터링 상황에 의거로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그 대리인 검사할 때 제출하는 검사보고 규정 사항 적당한 조정을 했음(첨부 참조). 2015년 5월 1일부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본 공고 첨부과 같은 규정하는 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함

☐ 첨부